

# G-Welfare Weekly Report

경기복지재단 | 발행인 (박춘배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| Tel. 031-267-9399 | www.ggwf.or.kr | 2015.12.30.
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『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』 명칭,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」으로 변경

##### 01 주요 내용

- '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'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' 으로 명칭을 변경
- 주요내용은 ① 공익활동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일원화 ② 취·창업활동 확대(3.8만명→4.9만명) 및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 개선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(사업명칭) 노인사회활동지원 (사업규모) 33.7만명* *추경예산 3.3만명 별도	(사업명칭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(사업규모)38.7만명
(공익활동 대상) 기초연금수급자 (일부 프로그램 미수급자 포함)	(공익활동 대상) 기초연금 수급자
(취업창업활동) 3.8만명	(취업창업활동) 4.9만명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
(전담인력 인건비) 월116.7만원(1,929명)	(전담인력 인건비) 월126.1만원(2,318명)

-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내용 변화 없이 부서 간의 대립과 정치적 이유로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
  - 명칭 : 노인일자리사업→('15년)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→ ('16년)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- 변경된 공익활동은 사업참여자 조건을 강화하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이 대상
  - 연령과 소득의 제한으로,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됨
  - 선발기준에서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단발적 봉사에 그칠 수 있음
-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은 노인권익증진활동으로 한정되어 활동 내용의 한계가 존재
- 참여자 교육시간이 소양교육 6시간 및 활동교육 8~16시간에서 활동교육 연간 10시간으로 축소
  - 아동, 장애인 분야 등에 참여하는 활동일 경우는 활동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교육시간이 필요

##### 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노인 재능나눔사업은 활동내용을 노인권익증진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개발하고, 참여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을 지원 유도
- 줄어든 참여자 교육시간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교육으로 질적 수준 제고로 보완

## 2. 노인·장애인 등 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 증액지원

### 01 주요 내용

- 행정자치부는 올해 노인, 장애인, 아동, 기초수급권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총 9천억 원의 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
  - 지방교부세법은 수요가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세입의 19.2%를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 - 지방교부세 중 지자체의 필수경비를 보전하는 보통교부세가 사회복지수요(노인, 장애인, 아동, 기초수급권자)의 20%를 반영하여 결정되던 현행 조항을 23%로 상향,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대한 가산비중을 높임
  - 사회복지수요는 복지서비스 대상 인구수를 비롯 상관관계가 높은 통계수치를 포함하여 표준 행정수요를 통해 산정되며 복지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세수를 보전함
  - 이번 개정은 저출산,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\*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

〈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〉 (단위:원)

구분		현행	개선
환경변화 반영	사회복지수요	•수요 20% 가산 반영	•23%
	지역균형발전 수요	•낙후지역반영(486개 면)	•성장촉진지역 추가(70개 시군)
자치단체 자구노력 인센티브 (패널티 강화)	세입확충	•지방세 징수를 제고/체납액 축소 •세외수입 체납액 축소, 축소액의 150%	•각 180%
	세출절감	•기준인건비 초과액에 패널티 50%	•인센티브 산실(절감액의 100%) •패널티 100%
		•전년대비 행사, 축제성 경비 절감액의 50%	•100%
		•전년 대비 지방보조금 절감액의 20%	•50%

-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하여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상 성장촉진지역(70개 시군)을 추가 지원하며,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(패널티) 반영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노력하는 만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### 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경기도의 2015년 보통교부세는 307,809 백만원으로, 강원 738,477백만원, 경북 906,837 백만원, 충남 518,019백만원 등으로 도(道)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음
  -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, 성남, 고양 등은 기준재정 수요 보다 수입이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며, 반대로 포천, 안산, 평택, 의정부 등은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의 차액이 커 보통교부세를 가장 많이 지원받는 등 시군간 교부액 차이가 큼
- 2016년도에는 교부세에 대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대상자는 많지만 세수 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경직성 경비라는 점에서 보조금 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우며,
  - 취약계층 지원이 국가 책무임을 고려할 때 이의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비중 확대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

02

#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 1. 2016년 복지제도, 이렇게 달라진다

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자 「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를 발간·배포

- 안내된 210건 중 사회복지 관련 제도 신설·변경 사항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노동, 여성, 아동·청소년, 가족, 범죄피해, 세제지원 분야에 포함된 38건임
  - 주요한 제도적 변화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확대,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본격화,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, 시간제보육 서비스기관 확대 등임
  - 세제분야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, 노동분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,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시행,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확대(1개월→3개월) 등임

〈표 1〉 2016년 분야별 복지제도 신규·변경사항

분야	구분	제도명	내용
복지	여성	1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	6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
		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	7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		3 자활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	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
		4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	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
		5 ICT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	2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
		6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	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/급여내용 변경
		7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 확대	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
		8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범위 확대	3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		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	1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강화
		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	2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
		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	3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강화
		1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	1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강화
		13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허용	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충
		14 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 신청 간소화	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
노동	범죄 피해	1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존	4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
		2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	5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
		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	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
		4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 축소	2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
		5 청년취업인턴제 취업희회 확대	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

-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7.6% 상향하였으며,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도 약 7.5% 상향조정하였음
  -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전 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시행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,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조
  -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28%에서 내년 29%로 소폭 확대하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확대되었고,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의 경우 내년도 선정기준이 기존 93만원에서 100만원(단독가구), 148.8만원에서 160만원(부부가구)으로 확대 예정. 복지부는 내년 4월 중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임

〈표 2〉 2016년 기초생활보장·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변경내용

구분	선정기준	보장수준	비고
기초생활보장	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8만 → 127만	4인 가구 기준 118만 → 127만	생계급여 선정기준 조정 : 중위소득 28% → 29%
기초연금	단독가구 93만→100만 부부가구 148.8만→160만	최대연금액 202,600원	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
장애인연금	단독가구 93만→100만 부부가구 148.8만→160만	기초급여액 202,600원 (부부수급자 20% 감액)	-

※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은 2016년 4월 보장수준을 205,230원으로 소폭 증액

# 03 FACT CHECK

## 한국의 노동개혁,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나?

- 정부·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규모 축소, 양극화 개선을 취지로 노동개혁 5대 법안(개정안)을 추진 중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됨
  -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, 기간제법, 파견근로자 보호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으로 구성

법안명	주요내용
근로기준법	근로시간 단축, 통상임금 개념 명시,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2주/3개월→1개월/6개월),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(10개) 등
기간제법	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(35세 이상, 4년까지) 계약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(2년 내 3회를 초과 금지)
파견근로자 보호법	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전문직, 제조업 등 추가
고용보험법	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: 지급수준(평균임금 60%)/지급기간(120~270일)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
산재보험법	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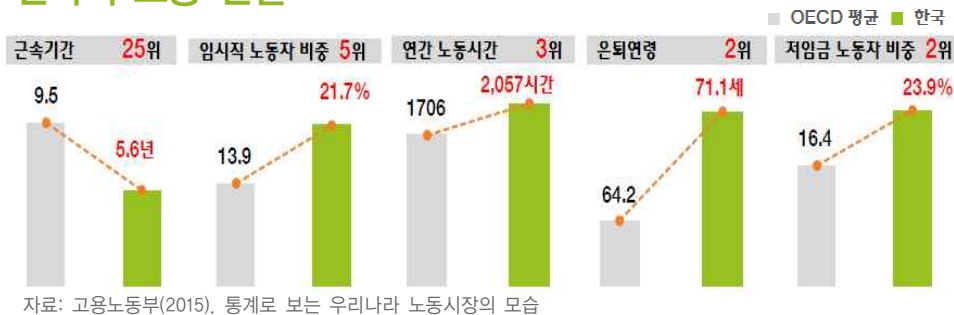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보고서\*는 한국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, 노동시간, 노동소득분배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한국이 OECD 최하위권이라 발표
  - 연간 근로시간(2,057시간) 3위, 근속기간(5.6년) 25위, 임시직 근로자 비율(21.7%) 5위, 저임금\* 근로자 비중(23.9%) 2위, 은퇴연령(71.1세) 2위를 차지
-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,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근로기준법),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(기간제법), 파견 허용 업종 확대(파견근로자 보호법) 등은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
- 정부가 추진하는 5대 법안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 등 노동현실을 반영하면서,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

\*고용노동부(2015),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

\*중위임금의 2/3 미만

# 04 통계로 보는 복지

## 한국의 노동 현실



- 고용노동부(2015)는 ‘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’를 통해 고용안정성 지표인 근속기간이 우리나라는 평균 5.6년에 불과해 OECD 25개 국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보고
  - 기간제, 파견 등을 포함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21.7%로 OECD 29개 국 중 5위
  - 연간 근로시간은 연평균 2천57시간으로 OECD 평균 1천706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이며,
  - 실제 은퇴연령은 남성 71.1세, 여성 69.8세로 둘 다 2위에 해당
- 노동소득분배율\*은 64.8%로, 경제 이익 가운데 노동자보다 기업이 가져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,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.9%로 미국(25.3%)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

\*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병과 대응 <5호:6.10.일자>

##### 01 감염병 관련 위기 대응이 미흡

-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, MERS)가 5월 20일 최초 확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6월 10일 현재 사망자 9명, 확진자 108명, 격리자는 3,439명에 달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
- SARS('02~'03), 조류인플루엔자('03), 신종플루('09)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('11) 등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가 작동되지 못함
- 우리나라는 「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(대통령훈령 제285호)」을 근거로 「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」을 갖추고 있으며,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, 부처·기관별 임무·역할 및 협조체계 등 법제도적 체계는 잘 갖춰져 있음
- 그럼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지휘라인의 역할 부재, 정보 공개 지연, 전염병 발병지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조 부족 등 이라는 비판이 존재

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=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임. 39도 이상 고열, 기침, 숨가쁨 등이 대표적 증상임

##### 02 해외 위기 대응 사례

- 선진국의 경우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정보공개와 이동경로 등 전염병 Data Map 작성
  - 미국은 에볼라 발병 시 환자의 실명은 물론 신용카드 내역까지 추적, 저녁식사를 한 레스토랑까지 공개, 홍콩도 사스 발병 당시 환자 발생 지역과 아파트 이름, 동까지 모두 공개
  - 영국의 Dr. John Snow는 1854년 런던에서 발병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위치와 콜레라 발병을 지도에 표기하여 그 패턴을 분석하여 전염을 예방
-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1988년 「스탠포드법」을 제정했으며, 이를 근거로 주 정부는 주법에서 지방정부는 조례에서 재난관련 사항을 규정
  - 상기 법에 따라 재난 재해 발생 시 일차적 책임기관은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이며,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

##### 03 시사점

- 위기 상황을 총괄하는 조직, 예를 들면 미국의 Emergency Operation Center(EOC)와 같은 임시조직을 운영하고, 전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축적
  - 위기 상황별 수준별 조직구성 및 운영, 지휘체계 등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습하여 즉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,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임시조직은 해체
- 지역의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권한 확대
  - 질환자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판별, 선조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

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 1.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1,496개 정비 추진 <15호: 8. 19>

#### 01 주요 내용

-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과 지자체간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1,49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('15.8.11.)
  - 정부는 지난 5월 '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세부 실천계획'을 발표('15.5.8.)한 바 있으며, 계획 상 4대 중점분야 중 하나가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것임

중점분야 1	중점분야 2	중점분야 3	중점분야 4
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	부적정 수급 근절	유사·중복 복지사업 정비	재정절감 인프라 강화

- 정비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

구분	조정방안
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↳ (예) 중앙 - 기초연금 / 지자체 - 장수수당	사업 조정 (통폐합)
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사업 ↳ (예) 중앙 - 교육급여 / 지자체 - 저소득층 교육지원 중앙 - 주거급여 / 지자체 - 사랑의 집짓기 사업, 주거마련 대출용자사업 등	
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↳ (예) 중앙 - 국민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-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,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	

#### 02 쟁점 및 경기도의 대응

- 중앙정부의 협의·권고를 통해 즉시 조정에 들어간 지자체 사업이 있음
  - 성남시: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(3일),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, 10월 시의회 임시회 상정
  - 화성시: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조례 개정 검토 중
- 지자체의 재량적 복지책임 범위(자치권) 침해 논란이 있음
  - 정부는 자치권을 감안하여 협의·권고를 통해 자율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(서비스 시간 확대)이나, 장애인 출산지원(대상 확대) 등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조정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
- 또한,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사업을 중복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
  - 중앙의 노인돌봄사업의 보충적 성격인 지자체의 노인목욕서비스·위생수당 등은 대상, 급여 수준,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,
  - 중앙정부 사업의 급여 적정성(충분성)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
- 경기도는 기 구성된 '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단' 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## 03

### FACT CHECK

#### 행복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나? <31호: 12.9.일자>

-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, '삶의 질'에 대한 측정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
  - GDP의 한계를 사회 및 환경 지표로 보완하려는 시도로, 국제기구인 OECD BLI(더 나은 삶 지수), UN Post-2015, EU GDP and Beyond 등이 있음
- '행복'은 '주관적 웰빙'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,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, 삶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측정
  - 행복은 반드시 '삶의 질' 또는 '생활수준'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, 사회에 따라 행복 기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- UN은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약 8% 정도라고 발표
  -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,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\*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신적·육체적 건강과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음
  -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비관, 물질만능주의 풍조, 공동체 의식, 전통관 등에 따라 행복정도도 큰 차이를 보이며, 사회적 신뢰, 직업의 질, 선택의 자유, 정치 참여 정도 등이 더 중요
-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\*은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의 안정, 심리적 안정, 본인과 가족의 건강, 가족·친구·직장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
  - 그 다음은 일과 관련된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으며,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 안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후순위로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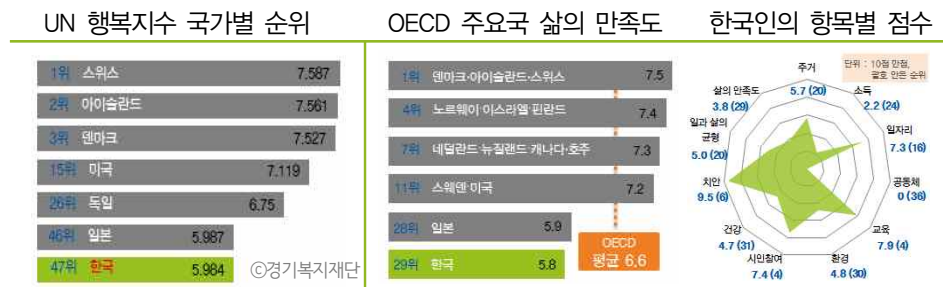
\*안정된 고용, 개인의 자유와 안전, 높은 수준의 신뢰, 견고한 공동체,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등

\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08).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.

## 04

### 통계로 보는 복지

#### 대한민국, 당신은 행복하십니까? <4호: 6.3.일자>



자료 : UN, 2015 세계행복보고서

자료 : OECD, 2015 Better life Index

- 국제기구들은 행복에 관한 국가별 비교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, 2015년 한국은 '2015 UN 세계행복보고서'에서는 158개국 중 47위, 'OECD 더 나은 삶 지수'에서는 36개국 중 29위를 차지함
- 국가별 비교는 각 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한계도 있으나, 우리의 일면의 자화상을 보여주기도 함
- 특히 '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'는 공동체 영역의 응답이 73%(평균 88%)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반영

\* UN 행복지수 : GDP, 기대수명, 갤럽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, 부패 등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순위가 결정됨

OECD 행복지수 (Better life Initiative: BLI) 소득, 환경, 공동체 등 11개 영역에서 경제지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측정 (ex. 일자리 : 실업률, 근로시간, 임금 등)